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7호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4 9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2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 1 4 9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3
○ 공	고 제 1 5 0 1 호	남동구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2
○ 공	고 제 1 5 0 3 호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3
○ 공	고 제 1 5 0 4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
○ 공	고 제 1 5 1 4 호	BMW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26
○ 의 회 사 무 공 고	국 제 2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8
○ 의 회 사 무 공 고	국 제 2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7

고 시

○ 고	시 제 1 0 1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51
○ 고	시 제 1 0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54
○ 고	시 제 1 0 3 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행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57
○ 고	시 제 1 0 4 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고시	6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4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고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 2 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의 세부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제 22조의2제1호 마목 신설)
 - － 마목: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나.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주차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2조제6호, 별표1)
 - － 6호: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희부지(지하공간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별표 1

3)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금 액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건설비용 100% 지원 (구 재정여건 및 예산범위 내)
<기타> ☐ 주차장 의무개방 20년 이상 ☐ 운영 및 관리 방식은 별도 협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2681, FAX 453-2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대상 명시(안 제22조의2제1호 마목)

☐ 본 문☐ 신 · 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 ----- ----- -----.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생 략) <u><신 설></u>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 개정에 따른 보조 대상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2조제6호, 별표1)

☐ 본 문☐ 신 · 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희부지(지하공간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구 분		지 원 금 액
담장철거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1면당 500,000원 최고 30,000,000원까지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일반 건축물	주차장 10면이상 개방가능한 사무실, 종교시설등		· 주차 노면표시 정비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법시설	설치비 100%, 면당 25만원, 최고 1,250만원
학 교	시설 개선	운동장 등 여유공간을 20면이상 주차공간으로 개방 가능한 초·중·고·대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법시설 설치비용	설치비 100%, 20면까지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
역세권 아파트	· 주차장 20면이상 개방가능 한 아파트 - 역과의 도보거리 200m 이내 -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전체 주차장의 50% 미만		·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법시설	설치비 100%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1,400만원
의 무 개 방 기 간			· 2년	
기 개방 건물에 대한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건축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설치비 100%, 일반건축물 최고 300만원, 학교·역세권아파트 최고 500만원
의 무개 방 기 간			· 2년	

3)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금 액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건설비용 100% 지원 (구 재정여건 및 예산범위 내)
<기타> ☐ 주차장 의무개방 20년 이상 ☐ 운영 및 관리 방식은 별도 협약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보조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제2조 (보조대상)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희부지 (지하공간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u>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4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2018. 7월) 개편으로 급식지원 아동 소득 판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급식지원 아동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개편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 부과

[2019년 1월 이후]

-
- 직장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유지
 - 지역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유지하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수급자, 한부모 등 수급자격 보유 아동은 종전과 변동 없이 지원
-

- 지원대상자 신설 및 문구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5871, FAX 453-58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18.7월) 개편으로 급식지원 아동 소득 판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급식지원 아동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개편 (안 제3조)
- 지원대상자 문구 명확화 및 신설 (안 제3조)

☐ 본 문

☐ 신·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지자체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 표준(안) (2018. 7. 26)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항사목 중 “보호자 사고”를 “보호자의 사고”로 하고, “ 및 학대·방임 등으로”를 “등 사유로”로 하며, “미약하여”를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호차목(종전의 자목) 중 “담임교사”를 “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 마. (생략) 바. <u>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u> 사. <u>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u> 아. (생략) <u><신설></u> 자. 그 밖에 <u>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u>	제3조(지원대상) ----- ----- -----. 1.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u> 사. <u>보호자의 사고, ----- 등 사유로 -----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u> 아. (현행과 같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u>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u> 차. ----- <u>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u>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
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
동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방안 안내

- (목 적)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18.7.) 개편으로 급식지원 아동 소득판정 기준인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급식지원 아동 선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도모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 부과

- (급식 지원대상 선정절차) 기초수급자, 한부모 등 수급권자는 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 결정, 기타 아동은 소득기준(중위소득 52%이하) 부합여부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 소득기준 개편방안 (아동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P4, 제6호 관련)

○ < '18년 하반기 >

◇ 현행 소득기준 유지*(유예), '18. 6월 보험료를 '18. 12월말 까지 적용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종전과 동일(중위소득 52% 이하)

- (신규 지원 아동) 건강보험료 변경 이후 신규 신청자는 건보료 월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동사무소·건보공단지사 방문, 인터넷(<http://si4n.nhis.or.kr>) 발급 등 활용

- (자격변동 가구 아동)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 기초수급자 등 자격확인 우선 활용 (자격이 없는 신청자는 아동의 결식우려 여부 확인 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19년 1월 이후>

- ◇ 직장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 52% 이하) 유지
- ◇ 지역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 52% 이하) 유지하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수급자, 한부모 등 수급자격 보유 아동은 종전과 변동 없이 지원

○ (운영실태 반영, 지원기준 확대) 현재 소득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지원 추진 중

* 소득기준 없이 지역사회 추천을 통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또는 시설 이용 아동 지원이 전체의 26%

- 급식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아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최저 보험료 대상 가구 아동은 최저 보험료 인상 비율에 따라 단계적 확대 추진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아동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p.4, 제4호 적용)

□ 지자체 협조 사항

- ‘19년 이후에는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아동이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 최저보험료 대상 가구원수 및 보험료는 매년 급식 업무 매뉴얼을 통해 공지

- 최저보험료 가구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 지자체별 지방재정 여건 및 결식우려 아동상황 등에 따른 적정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기준·절차 마련 등 사전준비 필요

□ 개편안 적용 : ‘19년도 아동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개정시 반영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01호

남동구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직 종	근무장소	근무분야	응시 번호	성 명	비고
기간제 근로자	남동구 평생교육과 (소래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야간)	소래-2	장○이	
			소래-4	김○자	
	남동구 평생교육과 (서창도서관)	"	서창-5	박○희	
			서창-1	백○주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제출일시 : 2018. 10. 02(화) 10:00
- 나. 제출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6층)
-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라. 문 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453-643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03호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곽○○ ○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길, *-**, ○○	2018.09.05.	2018.09.18.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5. (15일간/초일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8. 10. 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032-453-642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04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
3. 공시송달 대상 : 김*수
4. 공고기간 : 2018. 9.20. ~ 10. 6.
5.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가 20% 경감되며, 납부지연 시 가산금 5%, 증가산금 1.2%가 매월 부과됩니다. (최고 77% 가산금 부과)
7. 문의사항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032-453-2825)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운행자	주소	행정처분 및 사유	반송일 사 유
1	****거3890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층호(구월동)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유 :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2018.9.11. 폐문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14호

BMW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제1항에 의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우편송달(빠른등기, 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9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제목 : BMW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3. 공고기간 : 2018.09. 21. ~ 2018.10. 7. (15일간)
4. 공시송달 공고내역 : 세부내역 참조
5. 주의사항
 - 긴급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리콜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즉시 전국 BMW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차량은 점검 목적 이외의 사유로는 운행이 정지되오며, 점검 완료 시 운행정지는 당연 실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도난, 해외체류, 장기출장,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가장 빠른 시일 이내에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MW리콜대상안전점검미시행차량검사및운행정지명령공시송달

연번	차량번호	성명	발송지	내역	공고사유
1	**보4572	모*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호(만수동, ****)	BMW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폐문부재
2	**오7305	어*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BMW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폐문부재
3	**가0186	이*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동****호(논현동)	BMW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폐문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8-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회장

1.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안 제4조)
-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21. ~ 10. 01.

4.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1, 5030/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애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9 월 일

발 의 자 : 임애숙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안 제4조)
-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안 제6조)

☐ 본 문

☐ 신 · 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 제9조
-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근거하여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

[참고자료]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8-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회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육아휴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 ~ 제4조)
- 지원신청 (안 제5조)
- 장려금의 지급 (안 제6조)
- 장려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안 제7조 ~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10. 1 (1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
----------	------

발의연월일 : 2018년 9 월 21 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조성민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3인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아휴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 ~ 제4조)
- 지원신청 (안 제5조)
- 장려금의 지급 (안 제6조)
- 장려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안 제7조 ~ 제8조)

☐ 본 문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남동구 아동 현황
- 육아휴직자 수 및 휴직율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남동구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illegible]

[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④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남동구 0 ~ 9세 아동 현황

(2018.7.31. 현재)

연령대	아 동 수			비고
	계	남	여	
계	33,676	17,317	16,359	
0세	3,587	1,901	1,686	
1세	4,246	2,170	2,076	
2세	4,852	2,527	2,325	
3세	5,129	2,575	2,554	
4세	5,044	2,595	2,449	
5세	5,388	2,775	2,613	
6세	5,430	2,774	2,656	
7세	5,692	2,974	2,718	
8세	5,238	2,688	2,550	
9세	5,171	2,634	2,537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수 (고용노동부 2017년 통계)

년도별	계	여 성		남 성		비 고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	%	
합계	387,649명	367,657명	94.8	19,992명	5.2	
2012	64,069	62,279	97.2	1,790	2.8	
2013	69,616	67,323	96.7	2,293	3.3	
2014	76,833	73,412	95.5	3,421	4.5	
2015	87,339	82,467	94.4	4,872	5.6	
2016	89,792	82,176	91.5	7,616	8.5	

※ 육아휴직자 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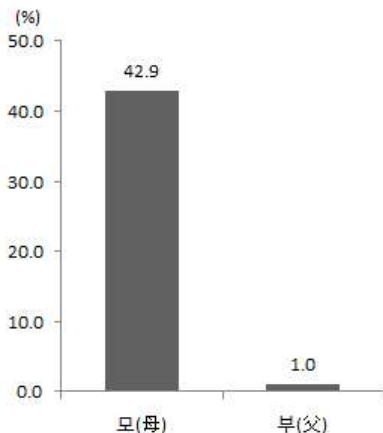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 자료중 일부(2017.12.14.) ↓

참고 육아휴직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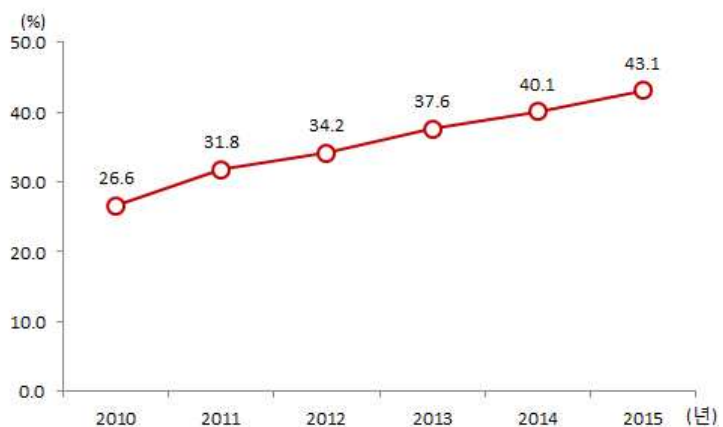
0~5세 자녀를 둔 모(母)의
2010~2015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률은 42.9%임

- 2010~2015년 기간 동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모(母)가 42.9%이며, 부(父)는 1.0%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로 모(母)가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에는 43.1%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0~5세) >



<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종사자DB」, 「출생DB」, 「영아사망DB」

【 육아휴직 사용률¹⁾】

(단위 : %)

0~5세 ²⁾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모(母)	부(父)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2.9	1.0	26.6	31.8	34.2	37.6	40.1	43.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종사자DB」, 「출생DB」, 「영아사망DB」를 이용한 시산자료로 이용 자료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람

주 : 1) 자녀의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2) 시산 기간(2010~2015)에 따른 연령임.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까지의 사용률은 향후 2018년 자료까지 기간 누적 시 산출 가능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4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남동구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인원
- 전국 육아 휴직을 및 육아휴직자 (2017년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통계자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31,197 (100%)	153,704	159,976	173,193	178,098
남	3,707 (2.83%)	5,573 (3.63%)	7,473 (4.67%)	11,325 (6.54%)	17,434 (9.79%)
여	127,490 (97.17%)	148,131 (96.37%)	152,503 (95.33%)	161,868 (93.46%)	160,664 (90.21%)

※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보험DB자료)

☞ 증감추이 분석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에 비하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2017년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자수(78명) 대비 25% 증가분 포함 계상
- 남동구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구분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합계	920	938	950
	남	45	63	78
	여	875	875	872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시스템)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4. 부대의견 :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375,000	465,000	585,000	735,000	2,46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375,000	465,000	585,000	735,000	2,460,000
	지방세	300,000	375,000	465,000	585,000	735,000	2,46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9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9-1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란(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란 (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23,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9	2009. 11.16	당좌라는 옛 마을의 유래를 반영하여 제명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당좌로 39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6-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26번 길	19	2009. 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626번길 19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3, 84,85,8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 번길	31	2009. 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29번길 31 기초구간에위치하여31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21번 길	10- 8	2009. 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21번길 10-8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8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21번 길	10- 10	2009. 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21번길 10-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10을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0-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 길	7	2009. 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7 기초구간에위치하여7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9-1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9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26번길	17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26번길	19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33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31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9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1번길	18-11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21번길	10-8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5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7	2018.09.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6-2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0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 길	6-2	2009. 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69번길 6-2 기초구간에위치하여6-2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 번길	39	2009. 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21번길 39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27,28, 3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0	2009. 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98번길 50 기초구간에위치하여50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5	2009. 11.16	소래역로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8. 09.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서로 5 기초구간에위치하여5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56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 길	5	2009. 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9.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40번길 5 기초구간에위치하여5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0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52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9-5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9-3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5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3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5	2018.09.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3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한 낙시어선 영업구역 이중 제한으로 어업인들이 겪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전한 낙시산업 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해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 방지,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와 낙시어선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 제7호의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 낙시어선업자, 선원 및 낙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제3조(영업시간의 제한) ①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

② 단, 레이다 반사기 등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어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낙시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허용한다.

1. 11월부터 3월까지 : 05:00 ~ 20:00
2. 4월부터 10월까지 : 04:00 ~ 21:00

제4조(운항횟수의 제한) 낙시어선업자는 법 제2조 제6호의 낙시어선업(이하 “낙시어선업”이라 한다)을 1일 2회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업구역의 제한) ① 낙시어선업자는 관할 구역내의 모든 도서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시어선의 승객을 안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갯바위·간출암에 부득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시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낙시어선을 대기시켜야 한다.

제6조(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른 제한) 낙시어선업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진흥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 조업규정」 등에 의한 제한 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 준수사항) ①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낙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②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에 따른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낙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낙시장소에서 낙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낙시어선 선장의 안전대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8조(낙시제한기준의 준수) 낙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낙시 제한·통제구역의 준수) 낙시어선의 승객은 개별법에 따른 제한 및 통제구역 등의 해역에 낙시어선 안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낙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낙시어선의 승객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낙시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7.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기타 준수사항) 낙시어선의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낙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미끼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92호)는 폐지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4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2018.9.20.)에서 의결, 확정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75,896,810	100.00%	754,832,106	100.00%	21,064,704	2.79%
일반회계		736,938,366	94.98%	715,873,662	94.84%	21,064,704	2.94%
특별회계		38,958,444	5.02%	38,958,444	5.16%	0	0.00%
기타특별회계		38,958,444	5.02%	38,958,444	5.16%	0	0.00%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250,241	1.32%	10,250,241	1.3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635,925	1.37%	10,635,925	1.41%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706	0.01%	80,706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129	0.15%	1,136,129	0.15%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000	0.04%	279,000	0.04%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4,163	0.01%	54,163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6,522,280	2.13%	16,522,280	2.19%	0	0.00%

세입총괄표

2018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6,938,366	100.00 %	715,873,662	100.00 %	21,064,704	2.94%
100	지방세수입	117,427,000	15.93 %	117,427,000	16.40 %	0	0.00%
110	지방세	117,427,000	15.93 %	117,427,000	16.40 %	0	0.00%
111	보통세	115,027,000	15.61 %	115,027,000	16.07 %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2,400,000	0.33 %	2,400,000	0.34 %	0	0.00%
200	세외수입	52,649,132	7.14 %	52,618,230	7.35 %	30,902	0.06%
210	경상적세외수입	37,550,242	5.10 %	37,550,242	5.25 %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64,000	0.01 %	64,000	0.01 %	0	0.00%
212	사용료수입	2,878,280	0.39 %	2,878,280	0.40 %	0	0.00%
213	수수료수입	14,412,600	1.96 %	14,412,600	2.01 %	0	0.00%
214	사업수입	3,241,536	0.44 %	3,241,536	0.45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4,881,326	2.02 %	14,881,326	2.08 %	0	0.00%
216	이자수입	2,072,500	0.28 %	2,072,500	0.29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098,890	2.05 %	15,067,988	2.10 %	30,902	0.21%
221	재산매각수입	1,201,687	0.16 %	1,201,687	0.17 %	0	0.00%
222	부담금	842,646	0.11 %	822,646	0.11 %	20,000	2.43%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037,888	0.28 %	2,037,888	0.28 %	0	0.00%
224	기타수입	8,214,669	1.11 %	8,203,767	1.15 %	10,902	0.13%
225	지난연도수입	2,802,000	0.38 %	2,802,000	0.39 %	0	0.00%
300	지방교부세	8,594,000	1.17 %	8,594,000	1.20 %	0	0.00%
310	지방교부세	8,594,000	1.17 %	8,594,000	1.20 %	0	0.00%
311	지방교부세	8,594,000	1.17 %	8,594,000	1.20 %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89,529,142	12.15 %	89,529,142	12.51 %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89,529,142	12.15 %	89,529,142	12.51 %	0	0.0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89,529,142	12.15 %	89,529,142	12.51 %	0	0.00%
500	보조금	394,018,665	53.47 %	386,700,836	54.02 %	7,317,829	1.89%
510	국고보조금등	276,965,439	37.58 %	271,730,031	37.96 %	5,235,408	1.93%
511	국고보조금등	276,965,439	37.58 %	271,730,031	37.96 %	5,235,408	1.93%
520	시·도비보조금등	117,053,226	15.88 %	114,970,805	16.06 %	2,082,421	1.81%
521	시·도비보조금등	117,053,226	15.88 %	114,970,805	16.06 %	2,082,421	1.8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720,427	10.14 %	61,004,454	8.52 %	13,715,973	22.48%
710	보전수입등	74,715,973	10.14 %	61,000,000	8.52 %	13,715,973	22.49%
711	잉여금	69,987,124	9.50 %	58,000,000	8.10 %	11,987,124	20.67%
712	전년도이월금	4,728,849	0.64 %	3,000,000	0.42 %	1,728,849	57.63%
720	내부거래	4,454	0.00 %	4,454	0.00 %	0	0.00%
721	전입금	4,454	0.00 %	4,454	0.00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6,938,366	100.00%	715,873,662	100.00 %	21,064,704	2.94%
100 인건비	79,705,549	10.82%	79,624,256	11.12 %	81,293	0.10%
200 물건비	33,062,955	4.49%	31,496,896	4.40 %	1,566,059	4.97%
300 경상이전	491,573,298	66.70%	485,605,234	67.83 %	5,968,064	1.23%
400 자본지출	93,405,811	12.67%	86,707,384	12.11 %	6,698,427	7.73%
700 내부거래	1,321,448	0.18%	1,321,448	0.18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37,869,305	5.14%	31,118,444	4.35 %	6,750,861	21.69%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36,938,366	100.00 %	715,873,662	100.00 %	21,064,704	2.94 %
010 일반공공행정	50,046,251	6.79 %	48,855,110	6.82 %	1,191,141	2.44 %
020 공공질서및안전	5,607,242	0.76 %	5,333,108	0.74 %	274,134	5.14 %
050 교육	11,994,014	1.63 %	11,994,014	1.68 %	0	0.00 %
060 문화및관광	11,165,327	1.52 %	11,003,911	1.54 %	161,416	1.47 %
070 환경보호	24,210,310	3.29 %	22,719,447	3.17 %	1,490,863	6.56 %
080 사회복지	410,097,361	55.65 %	405,199,546	56.60 %	4,897,815	1.21 %
090 보건	17,456,559	2.37 %	17,653,439	2.47 %	△196,880	△1.12 %
100 농림해양수산	3,986,542	0.54 %	3,936,872	0.55 %	49,670	1.26 %
110 산업·중소기업	4,059,389	0.55 %	4,038,509	0.56 %	20,880	0.52 %
120 수송및교통	16,011,332	2.17 %	15,627,932	2.18 %	383,400	2.45 %
140 국토및지역개발	59,390,272	8.06 %	53,386,150	7.46 %	6,004,122	11.25 %
160 예비비	32,929,632	4.47 %	26,278,771	3.67 %	6,650,861	25.31 %
900 기타	89,984,135	12.21 %	89,846,853	12.55 %	137,282	0.15 %

세입총괄표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	38,958,444	100.00 %	0	0
200 세외수입		6,292,534	16.15 %	6,292,534	16.15 %	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2,874,800	7.38 %	2,874,800	7.38 %	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3,417,734	8.77 %	3,417,734	8.77 %	0	0
500 보조금		4,155,026	10.67 %	4,155,026	10.67 %	0	0
510	국고보조금등	1,093,162	2.81 %	1,093,162	2.81 %	0	0
520	시·도비보조금등	3,061,864	7.86 %	3,061,864	7.86 %	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510,884	73.18 %	28,510,884	73.18 %	0	0
710	보전수입등	28,485,102	73.12 %	28,485,102	73.12 %	0	0
720	내부거래	25,782	0.07 %	25,782	0.07 %	0	0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38,958,444	100.00 %	0	0.00%
100 인건비	589,826	1.51%	323,382	0.83 %	266,444	82.39%
200 물건비	983,257	2.52%	982,457	2.52 %	800	0.08%
300 경상이전	3,644,158	9.35%	3,573,597	9.17 %	70,561	1.97%
400 자본지출	7,750,659	19.89%	7,736,220	19.86 %	14,439	0.19%
700 내부거래	4,454	0.01%	4,454	0.01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5,986,090	66.70%	26,338,334	67.61 %	△352,244	△1.34%

세출총괄표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	38,958,444	100.00 %	0	0.00 %
010 일반공공행정	168,027	0.43 %	168,027	0.43 %	0	0.00 %
070 환경보호	10,635,925	27.30 %	10,635,925	27.30 %	0	0.00 %
080 사회복지	842,962	2.16 %	842,962	2.16 %	0	0.00 %
120 수송및교통	16,324,038	41.90 %	16,324,038	41.90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10,664,110	27.37 %	10,664,110	27.37 %	0	0.00 %
900 기타	323,382	0.83 %	323,382	0.83 %	0	0.00 %